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해산물류추진단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운물류국에 스마트해운물류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조정한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항만물류기획과 및 항만운영과를 두되”를 “항만물류기획과·항만운영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을 두며”로, “기술서기관으로”를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지능화된 항만과 선박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된 해운 물류 체계(이하 “스마트해운물류체계”라 한다) 구축 전략의 수립·시행
 2.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 개발
 3.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항만 설비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육상·해상 물류 체계간 연계 효율화 및 활용 방안의 수립
 5. 스마트해운물류체계 관련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별표 17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2”를 “31”로, 서기관·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1”을 “52”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류팀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의2(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관 밑에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을 둔다. ②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 · 지능화된 항만과 선박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된 해상 물류 체계(이하 “스마트해상물류체계”라 한다) 구축 전략의 수립·시행 2.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 개발 3.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항만 설비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육상·해상 물류 체계간 연계 효율화 및 활용 방안 수립 5.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관련 인	<u><삭 제></u>

재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해운물류국) ① (생 략)

② 해운물류국에 해운정책과 · 연안해운과 · 선원정책과 · 항만물류기획과 및 항만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신 설>

제9조(해운물류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만물류기획과 · 항만운영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을 두며-----
-----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 · 지능화된 항만과 선박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된 해운 물류 체계(이하 “스마트해운물류체계”라 한다) 구축 전략의 수립 · 시행
2.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 개발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②·③ (생략)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u>별표 17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u>	3. <u>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항만 설비간 연계에 관한 사항</u> 4. <u>육상·해상 물류 체계간 연계 효율화 및 활용 방안의 수립</u> 5. <u>스마트해운물류체계 관련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u>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

기관 1명은 2022년 1월 31일까
지 존속하며, 2022년 2월 1일 이
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서기관·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
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
는 환경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u>32</u>	· · <u>31</u>	-1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 관	· · <u>51</u>	· · <u>52</u>	+1
· ·	· ·	· ·	